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Q&A



보건복지부

목 차

- Q1.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무엇인가요? 1
- Q2. 주거의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무엇인가요? 1
- Q3.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가 무엇인가요? 2
- Q4.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2
- Q5. 보호종료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신청할 수 있나요? ... 3
- Q6.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3
- Q7.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3
- Q8.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3
- Q9.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4
- Q10.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4
- Q11. 입주 전 별도 교육이 실시되나요? 4
- Q12. 어떤 경우 서비스 제공이 해제 또는 해지되나요? 5
- Q13.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살아도 되나요? 5
- Q14. 애완동물을 키워도 되나요? 5

Q1.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무엇인가요?

A1.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소득·주거·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주거지원과 함께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8년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2019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2. 주거의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무엇인가요?

A2. ①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청년매입 임대주택(원룸형 위주)**을 지원합니다.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과 최대한 가까운 지역의 청년매입 임대주택을 매칭하여 제공하게 되므로, **시설형이 아닌 독립적인 주거**가 지원됩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 **보증금·월세는 무료**이며,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 단,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LH에 예치금 10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 미납 관리비, 파손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됩니다.

② **세탁기·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가구**를 구비하여 초기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설치된 집기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계약 종료 후 반환해야 하며 해당 집기를 파손 시 파손 수리비가 청구됩니다.

Q3.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가 무엇인가요?

A3. ①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취업·학업 등 자립 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취업·직업훈련·생활·의료 등 개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해줍니다.

②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연 최대 240만원) 상당의 자립 경비를 지원합니다.

✓ 사례관리비 매월 20만원은 아동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사가 아동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며, 사례관리비는 전액 아동을 위해서만 쓰여집니다.

③ 상담은 매월 방문·내방·유선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주거 실태 및 아동의 욕구·문제 파악을 위해 주거 직접 방문은 분기별 1회에 한정합니다. 주거 방문 시 아동과 통합사례관리사가 성별이 다른 경우 성별이 동일한 자립지원전담요원, 위탁모, 시설 종사자 등의 협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Q4.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A4.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이 참여합니다. (총 240호)

지역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지원아동	30명	30명	30명	30명	30명	60명	30명

Q5. 보호종료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신청할 수 있나요?

A5. 보호종료 지역과 관계없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수행기관 명단은 3월 말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Q6.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6.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3,501,813원)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7. 최초 계약시 사례관리 및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소득, 자립 의욕 및 외부 전문가, 사례관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계약(2년)시 임대료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의 50% 수준입니다.

예치금	월 임대료	
	사례관리 기간 (입주~2년)	사례관리 연장 (2년~4년)
1,000,000원	무상	50%

Q8.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8. 2019년 4월 1일~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별 수행기관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 시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에 공고합니다.

Q9.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9.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10.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10. 신청서류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①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보호종료 확인서**, ⑤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을 제출
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관계기관 추천서는 **선택사항**으로,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시·도, 시·군·구청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Q11. 입주 전 별도 교육이 실시되나요?

A11. **입주 전·후 주거관리, 재무관리, 보건·위생 교육 등 총 2회**에 걸쳐
아동자립지원단을 통해 교육이 실시됩니다. 선정 대상 아동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지역 별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수행기관에서 개별 안내 및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 안내문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 불참 시 타 지역 교육 참석 가능

Q12. 어떤 경우에 서비스 제공이 해제 또는 해지되나요?

- A12. ① 입주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등 **임대차 계약서 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됩니다.
- ② 원가정 복귀, 지역 이전, 자립을 한 경우 등의 이유로 사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례관리 거부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서약서 상 위반사항에 해당할 경우 통합사례관리서비스가 해지**됩니다.

Q13.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살아도 되나요?

- A13. 원 가족의 경우 사례관리사의 승인 하에 단기간 투숙이 가능하며, 원 가족 이외의 타인은 투숙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Q14. 애완동물을 키워도 되나요?

- A14. 주거 관리 상 강아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사육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개별 지역 담당 수행기관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에서 확인하세요!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 자립수당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동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예시 A 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 7개월을 지내다 만기 퇴소한 경우 → A아동양육시설(6개월) + B공동생활가정(1년 7개월) = 2년 1개월 인정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시 포함

단, 보호종료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인정자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급금액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입니다.

신청기간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②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신청서류

① 필수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②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통합 사례관리를 지원하여 소득·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원) 인 자

신청지역



• '19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도가 참여합니다.

지원내용



①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240호를 지원합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 보증금·월세는 무료이며,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주 시 내에 예치금(100만원)을 맡겨야 하며 계약종료 시 미납 관리비, 파손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줍니다.

② 주거환경조성

- 세탁기·냉장고·가스레인지·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가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③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취업·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 진학·직업훈련·생활·의료 등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지원을 발굴 및 연계해줍니다.
-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 경비를 지원합니다. (연 최대 240만원)
- 사례관리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방문·내방·유선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4월 30일

- ※ 각 지역 수행기관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신청방법



•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① 필수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 확인서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② 추가 제출 서류

- 아동자립지원단장,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시·도·시·군·구청장 등의 추천서(선택사항)
 - ※ 추천서는 선택사항으로,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Q&A

“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자립수당

- ① 언제까지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9년은 시범사업으로서 12월까지 지급합니다. 본 사업 시행 시 별도 신청 없이 수급 권이 연계됩니다.
- ②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거지원

- ① 보호종료 후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종료 지역과 관계없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 수행기관 명단은 3월 말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재
- ②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연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취업·익업 등 자립 정보 제공, 가능한 급여·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득 지원

-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 만 30세 미만 :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 만 24세 이하 : 근로소득공제 확대
 - (기준)40만원+추가30% → (변경)50만원+추가30%

주거 지원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실시 (240호)
 - 원룸형 주거지원(임대료 무료, 관리비만 부담)
 - 자립 정보,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사례관리
 - 2019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도가 참여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개별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 <http://jarip.or.kr>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금액 :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
- 지급일 : 매월 20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시작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알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 가능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2 우편 또는 팩스신청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단, 제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등

Q&A, 신청서식, 수행기관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jarip.or.kr>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다만,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원) 인자

지원방법

- 내 청년매입임대주택 240호 지원 : 6월 입주
 - 보증금, 임대료 무료
 - 관리비, 예치금(100만원) 본인 부담
-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가구 구비
- 자립정보,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사례관리 : 7월 이후
 - 매월 20만원(연 최대 240만원) 상당 자립 경비 지원

신청지역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 ~ 4월 30일

신청서류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보호종료 확인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관계기관 추천서(선택사항) : 선정 시 가점 부여

신청방법

-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 제출
 - 수행기관 명단 및 주소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재

